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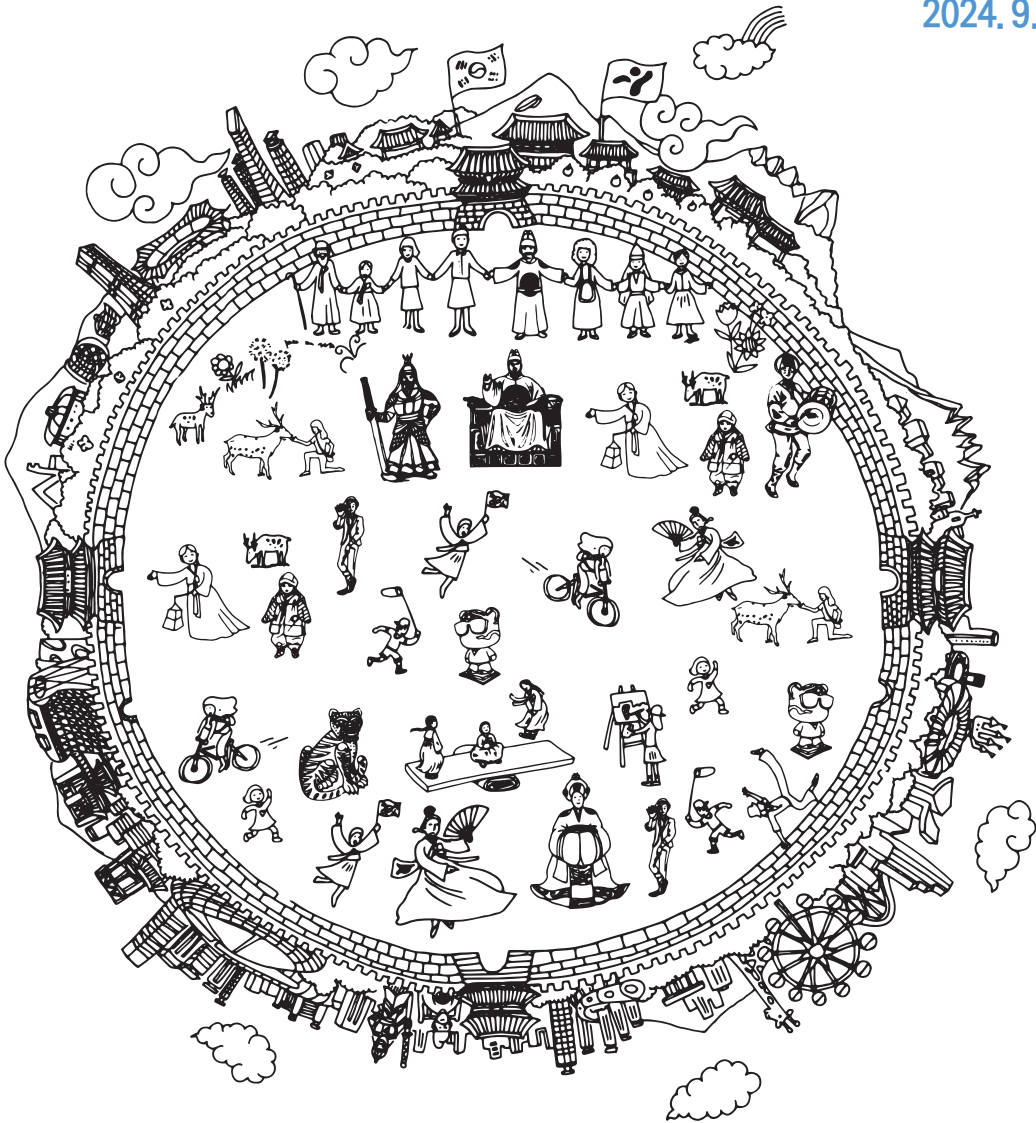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06호
2024. 9. 10.(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규 칙]

제466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[훈 령]

제1059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4

공 고

[규 칙]

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663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4년 9월 10일

제3조제2항 중 “콘텐츠, 홍보 마케팅”을 “콘텐츠”로, “정책 분야”를 “영상 분야”로, “정무수석, 미디어콘텐츠수석, 마케팅전략수석, 메시지수석, 문화수석, 디지털수석을”을 “미디어 콘텐츠수석, 기획수석, 메시지수석, 문화수석, 디지털영상수석을”로, “정무수석, 미디어콘텐츠수석, 마케팅전략수석, 메시지수석, 문화수석, 디지털수석은”을 “미디어콘텐츠수석, 기획수석, 메시지수석, 문화수석, 디지털영상수석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—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개정이유

효율적인 정책결정 및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정 행정수요에 적합한 정책 결정 보좌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임기제 직위명 변경

- 마케팅전략수석 → 기획수석
- 디지털수석 → 디지털영상수석

나. 효율적인 전문임기제 직위 운영을 위한 일부 직위 폐지

- 정무수석 직위 폐지

[훈 령]

◆ 서울특별시훈령 제1059호

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4년 9월 10일

제4조 중 “말한다” 를 “말한다. 이하 같다.” 로 한다.

제5조 중 “청원경찰” 을 “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509명” 을 “448명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검토하여야 한다” 를 “검토할 것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감하여야 한다” 를 각각 “감할 것” 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65조 및 제66조를” 을 “제69조를” 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발급요청을 할” 을 “발급을 신청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반납하는” 을 “반납받는” 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 중 “근무시간은” 을 “근무시간:” 으로, “18:00시까지로 한다.” 를 “18:00시까지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근무시간은” 을 “근무시간:” 으로, “09:00시까지로 한다” 를 “09:00시까지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하여서는 아니 된다” 를 “하지 말 것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근무한다” 를 “근무할 것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근무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(당직사령) 및 대장(반장)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, 사용부서의 장(당직사령) 및 대장(반장)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⑤ 사용부서의 장은 폭우, 폭설, 집단소요 등 비상사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시간 이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제33조를 삭제한다.

제40조 중 “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” 을 “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

규정」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청원경찰 정원표(제6조 관련)

부 서 별	합계
총계	448
본청	91
민원담당관	1
민방위담당관	11
총무과	70
일자리정책과	1
광화문광장사업과	8
직속기관	18
보건환경연구원	8
인재개발원	4
소방학교	6
사업소	338
서울아리수본부	99
미래한강본부	54
데이터센터	2
시립어린이병원	4
시립서북병원	4
시립은평병원	4
서울공예박물관	12
시립미술관	3
체육시설관리사업소	49
동부도로사업소	1
서부도로사업소	1
남부도로사업소	1
북부도로사업소	1

부 서 별	합계
성동도로사업소	1
강서도로사업소	1
중량물 재생센터	7
난지물 재생센터	9
동부공원여가센터	19
중부공원여가센터	6
서부공원여가센터	37
서울식물원	14
서울기록원	9
의회사무처	1
의회사무처	1

—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개정이유

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이관 및 기관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기관(부서)별 정원조정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509명
에서 448명으로 61명 감원 조정(제6조 및 별표 1)

나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